

#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4. 12(월)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3. 23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10. 3. 23
- 라. 상정일자 : 2010. 4. 6.(제18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2007. 11. 1일에 발의한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되어(2007추158호, 2009. 12. 24.) 이전 조례로 환원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업종 등 삭제(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조정함.(안 제7조)
- 협의회 기능 중 외국인 투자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8조제3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 동 조례안 개정은

-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를 제158회('07. 9. 18) 본회의시 일부개정하여 의결하였으나 '07. 10. 5 인천광역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제160회('07. 11. 1) 본회의에서 재의결 하여 '07. 11. 12에 조례 공포 되어,
- '09. 12. 24 대법원에서 본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을 판결함에 따라 당초 조례안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은

- 조례안 제4조 및 제6조 중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매각 또는 대부 등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 조세감면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 것은, 공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격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음.
- 조례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상위 법령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게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며,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시장의 인사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하였음.
- 조례안 제8조 제3호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유치협회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관련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확정하거나 승인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 계획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유치계획을 집행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이는 장관의 권한에 속하고 국가사무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집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이 되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하였음.

- 이와 같이 조례 안 중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배되는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결하였음.

#### ○ 금번 조례의 개정 사항은

- 현행 조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업종 등에 관한 사항(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협의회 기능 중 제3호를 삭제하고
- 제7조의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내용중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를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등
- 당초의 조례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 의 >

#### ○ 윤지상, 김소림, 이상철, 조남휘 위원

-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위법하다는 내용은 아님, 향후 보완 반영할 계획은?

### < 답 변 >

#### ○ 정병일 기획관리실장

- 일단 조례를 원상태로 한 다음, 향후 반영 가능성에 대해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겠음.

##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윤지상, 김소림, 이상철, 조남휘 위원
- 나. 반 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4명)

##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 임 : 1.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시 본청(경제자유구역외 업무)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 업무)”을 “간사 1인을 두되, 시 본청”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2. 시 소속 실·국장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다만,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3.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그 밖에 경제계 및 금융계 등의 인사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분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li> <li>2. 경제자유구역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지원 및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한다)</li> <li>3.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li> </ol>	<p>&lt;삭제&gt;</p>
<p><u>제4조(입주외국인투자기업)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과 토지매각 및 대부 등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 할 수 있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여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lt;개정 2008-8-4&gt;</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화 1천만불 이상의 투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li> <li>2. 미화 1천만불 이상의 투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li> <li>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 휴양업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li> </ol> </li> </ol>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p> <p>3. 미화 5백만불 이상의 투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p> <p>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 사업</p> <p>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p> <p>다.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 산업</p> <p>라.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 산업</p> <p>4.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p> <p>5. 미화 1백만불 이상의 투자로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p> <p>가. 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별표1에 계기된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동표에 계기된 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명 이상 고용할 것</p> <p>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p>	

현 행	개 정 안
<p>다.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에 직접 관련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p> <p><b>제5조(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b>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6의2 규정에 의거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국  4.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p> <p><b>제6조(개발사업시행자)</b> ①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및 토지매각 또는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 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p>	<p>&lt;삭제&gt;</p> <p>&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제7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p> <p>③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투자유치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기타 경제계 및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 ⑥ (생략)</p> <p>⑦ 협의회는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시본청(경제자유구역외 업무)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 업무)의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실·과장이 된다.</p> <p>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1. ~ 2. (생략)</p> <p>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관련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다만,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4. (생략)</p>	<p>제7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p> <p>2. 시 소속 실·국장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다만, 해당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p> <p>3.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기타 경제계 및 금융계 등의 인사</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간사 1인을 두되, 시 본청----- -----.</p> <p>제8조 (협의회의 기능)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lt;삭제&gt;</p> <p>4. (현행과 같음)</p>